



등록번호 : 20080100446
최초등록일 : 2008. 09. 03.
최종등록일 : 2025. 12. 22.

www.hansdeli.com

정 보 공 개 서

(주)한스앤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한스앤컴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로부터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2, 4층 407호(원흥동, 3호선 원흥역 봄오피스텔)

Tel) 1544-5212

Fax) 02)706-1383

가맹사업 담당부서 : 점포개발팀 Tel) 070-8282-5233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 한스앤 컴퍼니	한스텔리 외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2, 4층 407호(원흥동, 3호선 원흥역 봄오피스텔)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10.1.	2003.10.1.	2003.10.1.	김세준	1544-5212	02-706-1383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509		사업자등록번호	108-81-6286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김 세준	한스텔리 외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2, 4층 407호(원흥동, 3호선 원흥역 봄오피스텔)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10 - 현재	김 세준	1544-5212	02-706-1383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등기임원)	한 상두	한스텔리 외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2, 4층 407호(원흥동, 3호선 원흥역 봄오피스텔)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10 ~ 현재	김 세준	1544-5212	02-706-138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해당없음				

가맹본부를 합병함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한스델리]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한스델리	신개념 한국형 델리샵
상 호	한스델리 OO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80328-0000
		등록번호 : 41-0304634-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한스델리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979,574	1,249,403	730,171	2,342,636	12,881	3,563
2023년	1,784,140	1,051,115	733,024	1,770,392	27,696	2,853
2024년	1,671,231	935,588	735,643	1,404,110	48,867	2,618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 세준	대표이사	2003.10 .- 현재.	(주)한스앤컴퍼니 대표	경영총괄
			2003.10 - 2006.06	“베어마운틴” 대표	경영기획
	한 상두	전 무	2006.07 - 2009.12	“미가현” 대표	
			2010.1 - 현재	(주)한스앤컴퍼니 전무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한스앤컴퍼니	가맹사업 경영	2004.04.~2022.03	한스텔리쿱(등록번호: -)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2.26. ~ 현재	수작카츠(등록번호: 20220487)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 당사의 한스텔리쿱은 2022년 3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상표권	등록일자 : 2009.01.20	등록번호 : 제41-0180328호	(주)한스앤컴 퍼니	2029.01.20.
한스델리		등록일자 : 2014.11.17	등록번호 : 41-0304634-0000	(주)한스앤컴 퍼니	2034.11.1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한스텔리]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4년 4월 30일

2. 한스텔리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사업경영기간	사무소 소재지
(주)비엠앤와이	한스텔리	김세준	2003.10.01.~2009.03.1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318호
(주)한스텔리	한스텔리	김세준	2009.03.12.~2012.01.01	
(주)한스앤컴퍼니	한스텔리	김세준	2012.01.02.~2020.11.29	
(주)한스앤컴퍼니	한스텔리	김세준	2020.11.30. ~2024.05.26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34, 제판매시설동 제2층 제217호(진관동, 은평스카이뷰자이)
(주)한스앤컴퍼니	한스텔리	김세준	2024.05.27.~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2, 4층 407호(원흥동, 3호선 원흥역 북오피스텔)

3. 한스텔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스텔리	기타외식	등심돈가스,스파게티,볶음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한스텔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52	51	1	38	38	0	34	34	0
서울	5	4	1	1	1	-	1	1	-
부산	4	4	-	3	3	-	2	2	-
대구	1	1	-	-	-	-	-	-	-
인천	4	4	-	4	4	-	3	3	-
광주	2	2	-	1	1	-	1	1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2	12	-	9	9	-	9	9	-
강원	5	5	-	4	4	-	4	4	-
충북	-	-	-	-	-	-	-	-	-
충남	5	5	-	5	5	-	4	4	-
전북	5	5	-	3	3	-	3	3	-
전남	3	3	-	2	2	-	1	1	-
경북	4	4	-	3	3	-	3	3	-
경남	1	1	-	2	2	-	2	2	-
제주	1	1	-	1	1	-	1	1	-

5. 최근 3년간 [한스텔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61	0	7	3	1	51
2023년	51	2	12	3	4	38
2024년	38	0	4	0	0	34

6. [한스텔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한스앤컴퍼니	한스텔리룩	20181011	기타외식	2/0	2/0	-
		수작카츠	20220487	기타외식	9/0	12/1	13/1

☞ 당사의 한스텔리룩은 2022년 3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하였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한스텔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3.3m ² 당	하한	면적3.3m ² 당	
전체	34	152,035	4,051	423,905	20,173	1,711	63	34곳 산정
서울	1							5곳 미만

부산	2	-	-	-	-	-	-	5곳 미만
대구	-	-	-	-	-	-	-	-
인천	3	-	-	-	-	-	-	5곳 미만
광주	1	-	-	-	-	-	-	5곳 미만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9	156,381	4,132	278,629	7,297	72,576	1,879	9곳 산정
강원	4	-	-	-	-	-	-	5곳 미만
충북	-	-	-	-	-	-	-	-
충남	4	-	-	-	-	-	-	5곳 미만
전북	3	-	-	-	-	-	-	5곳 미만
전남	1	-	-	-	-	-	-	5곳 미만
경북	3	-	-	-	-	-	-	5곳 미만
경남	2	-	-	-	-	-	-	5곳 미만
제주	1	-	-	-	-	-	-	5곳 미만

* 당사에서 추정 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 당사는 가맹점이 5곳 미만인 지역은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사업본부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한스텔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한스텔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4년	34	4,01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2년]에 [한스텔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7,620		-	
광고			1,272		-	
판촉			6,348		-	

☞ 당사는 한스텔리 외에 한스텔리룩 가맹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 중 한스텔리에 사용한 광고, 판촉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사항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보험계약자	(주)한스앤컴퍼니	가맹본부
피 보험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금을 지급 받는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 까지)	
보장범위	예치 가맹금 13,000,000원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시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한스텔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4,500-48,000]천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창업비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전부 예치	확정 금액
가맹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전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7,700	계약 체결 즉시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교육비	3,300	교육시작 3일 내	교육 시작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보증금(현금)	2,000	계약 체결 즉시	본사의 판촉물 대금, 지원 물품에 대한 미수금 발생 시 상계처리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3,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000
가입비	7,700
교육비	3,300
이행 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한스델리 홈페이지 (www.hansdeli.com), 한스델리 카달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 천원, 99㎡ 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76,500-80,000]	[23,181-24,242]		
인테리어 (점포 내,외장공사)	점주 개별시공	45,000 30평 기준	1,500		디자인 관련 본사 광고팀 지원
초도 식자재	별첨1 참조	2,500 -3,000		물품 공급후 1주일 이내	
주방기물류	협력업체	23,000 ~ 25,000		설치일 이전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주)한스앤컴퍼니	6,000 ~ 7,000		매장 오픈전	개점행사(이벤트) 기타비용은 협의진행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
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사양(인테리어, 추가공사, 가맹점주가 요구
하는 다른 품목, 오픈이벤트, 판촉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계

약 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후 매장 인테리어가 개시되기 직전 가맹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실제 집행비용-도면비, 출장비, 경비 외...)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해 드립니다. 단, 인테리어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1544-5212)	상담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출점 타당성 분석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본사의 손익분석후 타당성 검토하고,가맹 희망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점포 선정. 희망자의 동의후 진행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닌 사람으로 음식, 조리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마인드 소유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가맹점주, 매장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한스텔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처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총액의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납부일		계약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영업 개시 후 가맹사업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26.5]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로열티		220	매월 초			의무사항
광고 분담금		해당없음				프로모션시 공동부담금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추가 교육비 협의진행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1]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가맹점 자체진행
POS 사용료	메타포스 협력업체	16.5/월	매월 말일			메타포스
지연이자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의 한스텔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2회/월**, 정기적으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매장 운영의 전반적인 운영지도와 영업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추가 교육비	해당사항 없음				
점포 이전비	해당사항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승계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한스텔리]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5,500천원)와 계약이행 보증금(2,000천원)을 [(주)한스앤컴퍼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고자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한스텔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2와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한스텔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한스텔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원·부재료	정유통, 백두유통, 한길유통	정유통, 백두유통, 한길유통	물류 수익	102,790	2024년 기준
계				102,790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물류수익 = 물류유통(두레유통/백두유통/한길유통/한백에프에스하임푸드)에 납품한 금액
-- 물류매입액

2) 당사가 [한스텔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메뉴의 종류 및 가격 기준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기준은 당사의 메뉴판을 참고 바랍니다.

(한스텔리 주요 상품명 List)

(단위:원)

착한메뉴		돈가스/스테이크		플러스메뉴	
등심 돈가스	7,900	고구마 치즈돈가스	8,900	고르곤졸라 썬피자	12,500

토마토미트 파스타	7,900	모짜렐라 치즈돈가스	8,900	불고기 썬피자	12,500
소시지 야채볶음밥	7,900	텔리킹 돈가스	10,900	김마리 룡롱떡볶이	8,500
치킨마요 덮밥	7,900	김치돈가스 나베	8,900	김마리 로제떡볶이	9,500
스페셜 어묵우동	7,900	비프 찹스테이크	17,900	모듬감자 프라이	4,900
		바비큐 폭립스테이크	22,900	모짜치즈볼	5,500
치즈도리아		파스타		허니버터 포테이토	5,500
우삼겹 로제도리아	9,500	치즈오븐 파스타	8,900	미니치킨볼	5,900
치킨볼 치즈도리아	8,900	까르보나라 파스타	9,500	허니버터 치킨볼	6,500
		스테이크 크림파스타	11,900	버터갈릭 포테이토	5,900
		빠네 크림파스타	11,900		
		햇쉬림프 로제파스타	10,900		
오므라이스/덮밥/필라프		까르보 불닭파스타	9,900		
치즈끝판왕 김치밥	9,500	쉬림프 오일파스타	8,900		
치즈함박 오므라이스	10,900	우삼겹 토마토파스타	8,900		
돈가스 오므라이스	8,900	우삼겹 짬뽕크림파스타	10,900		
순살치킨 오므라이스	8,900	음료			
소시지 오므라이스	8,500	탄산음료	2,000		
매콤닭갈비 덮밥	8,900	복숭아 아이스티	2,500		
연탄불고기 덮밥	8,900	망고피치 주스	3,000		
우삼겹마요 덮밥	8,900				
쉬림프 필라프	9,900				
바비큐치킨립 필라프	9,900				
스테이크 필라프	10,500				
갈릭불고기 필라프	9,500				
스파이시치킨 필라프	9,500				
*제한내용, 조건	상기 메뉴 이외의 메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의 판매 메뉴 중 본사와 협의를 거쳐 Store Menu 1~2가지는 선택 가능함.				
*위반 시 책임	메뉴, 가격의 위반 판매 시 1차 담당 슈퍼바이저의 구두경고, 2회 위반 시 본사 명의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3회 위반 시 계약해지 절차 진행.				

[귀하가 당사의 기준 메뉴판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메뉴의 종류 및 가격 기준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기준은 당사의 메뉴판을 참고 바랍니다.(당사 홈페이지 참고 : www.hansdeli.com)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델리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	한스델리, 수작카츠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행정구역, 상권의 중첩으로 인근 매장과 영업지역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나 배달의 경우 협의조정할수 있음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한스텔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한스텔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년	<u>100%</u>	<u>0%</u>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한스텔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p>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p> <p>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p>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p> <p>가맹본부가 상기 조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파산신청,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p>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p>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12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업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표준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6조 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p>	
<p>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p>	
<p>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p>	
<p>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p>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유선/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3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팀 (1544-521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고, 본사는 양수인과 새로운 가맹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담당 슈퍼바이저는 기존 매장에 대한 시스템(인적자원 구성, 주방 기물 점검, 매장 운영 현황 점검, 매장주의 요청사항 협의)을 다시 세팅해 드립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해당사항 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한스텔리]의 영업상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해당사항 없음	관혼상제, 정기휴가 외 특별한 사유없이 7일 이상 휴점 제한	문의: 영업팀 (1544-5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각 가맹점 상황 및 가맹점주의 매장 운영상 필요한 기준으로 자체 운영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시설(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시설 확인 → 관리표 작성 → 점주 시정조치 요청 → 확인.완료	1회/월	영업관리팀	
위생(8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위생점검 → 관리표 작성 → 시정조치,완료	1회/월	영업관리팀	
서비스(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포인트 확인 → 관리표 작성 → 교육 및 시정조치. 완료	2회/월	영업관리팀	
메뉴관리(3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메뉴 맛 확인 → 관리표 작성 → 레시피 수정 및 시정조치. 완료	2회/월	영업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본사 가맹점 관리 기준대로 확인,점검후 각 가맹점에 피드백 하여 보다 우수한 모범점이 될 수 있도록 지표로 활용 합니다.

※ 관리표(첨부자료 참고)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가맹점사업자는 본사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에 대하여 마케팅 프로모션 등의 비용은 브랜드홍보 시행 시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분담하여 지출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 ▶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2]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2일 내외	95,5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2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4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 보상보험가입	D-34	13,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2	- 인 테 리 어 4,500/30평 (추정금액) - 주방기구,기물류 30,000/30평 (추정금액)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8(21)	-개별 공사 계약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점포계약서의 변수(권리금 및 영업허가 승계시 발생하는 용도변경등..)와 인테리어 공사기간(동절기 동파로 인한 변수 및 하절기 폭우로 인한 변수 등..)동안의 변수, 본사 신규 매장주 운영교육 시 직원 미충원에 대한 변수, 인테리어 완료 후 소방 및 인·허가 사항 미비로 인한 변수 등을 감안해보면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맹점주와 영업본부장과의 협의,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	분쟁 해결 절차	비고
가맹점관리 담당자 1, 영업본부장 1, 가맹점사업자 대표 1(총 3인)	분쟁 조정 제의 → 협의,조정 → 합의. 결정	문의:영업관리팀 1544-5212

[영업본부장과의 협의, 조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나 가맹점사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잡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양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위하여 본사의 수퍼바이저가 매월 정기적인 점검과 경영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매장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문제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경영지도(메뉴평가,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메뉴평가,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및 문제 사항 요청 → 가맹본부 는 요청 수렴 후 내용 파악 →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개선 안 및 해결안을 가지고 직접 방문 및 처리	가맹점 부담 (가맹점 추가비용은 협의후 진행)	문의: 영업팀 (02-1544-5212)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한스텔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신용명,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형태	신용 제공조건
프랜차이즈 우대 신용대출	하나은행	최대 3천만원	신용대출	가맹사업주 신용 등급

(상기 신용 대출을 원하는 가맹사업 예정자는 본사 점포개발팀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한스텔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Ⅶ.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한스텔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본사 교육	회사 소개 브랜드 컨셉, 경쟁력 세무, 운영관리 매장관리 포인트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협의결정	필수 교육
현장실습 교육	메뉴 조리 실습 매장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협의결정	필수 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한스텔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 용 (단위:천원,VAT포함)	비고
본사 교육	1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현장실습 교육	5일		최초 계약시 이수

* 현장실습 교육의 경우 최소교육 인원은 3명 기준입니다.(홀:1명, 주방:2명)

* 상기 내용은 신규 매장주 교육에 대한 내용이며, 기존 매장주 보수 교육의 경우 본사와 협의하에 진행 가능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당사항 없음.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오픈일정을 최대한 조율하여 오픈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재 교육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함.]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3			

▶ 당사는 한스텔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관리팀(1544-521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hansdeli.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한스텔리 필수품목(강제)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점검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2024년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2년

[별첨4]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한스앤컴퍼니	영업표지	한스텔리
제공확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한스앤컴퍼니 대표이사 김 세 준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한스앤컴퍼니	영업표지	한스텔리
제공확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한스앤컴퍼니 대표이사 김 세 준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